

인천시청역 한신더휴 |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 [노부모부양 특별공급]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공통 서류 (필수) | 0 | | 가점 산정 기준표 | 본인 | * 견본주택 비치 |
| | 0 | | 무주택 서약서 | 본인 | * 견본주택 비치 |
| | 0 |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본인 | *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급용, 대리인발급분 접수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제3자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|
| | 0 | | 신분증 | 본인 | 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일 신규발급분 제외) 등 |
| | 0 |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| 본인 | *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본인 | *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'전체포함'으로 발급 |
| | 0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'상세'로 발급 ※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|
| | 0 |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*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및 본인,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/이혼 사항 확인, "상세"로 발급 *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당첨자 추가서류 (해당자) | 0 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*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외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한 경우 |
| | 0 |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| 배우자 | *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직계존속 | *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- 성명, 주민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"전체포함"발급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직계비속 | *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1년 이상 부양가족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, 주민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"전체포함"발급 |
| | 0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배우자 | *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경우) |
| | 0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직계존속 | *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,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, *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0 |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직계비속 | *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성명, 주민등록번호 '상세'로 발급) |
| | 0 | | 출입국사실증명 | 피부양 직계존·비속 | * 피부양 직계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|
| 제3자 대리인 추가서류 | 0 | | 인감증명서 | | *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(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, 인감도장 일치여부 확인 |
| | 0 | |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또는 서명 | | 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대리인 본인 확인) |
| | 0 | | 위임장 | | * 견본주택 비치 |
| 기타 | 0 | |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 | | *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서류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,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등) |

※ 상기 제출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4.22.) 이후 발행분**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함.

※ 상기 서류는 당첨자의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미비 접수가 불가하며, 상황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※ 사전 서류검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계약 시 구비서류로 같음하며,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※ 모든 서류는 "상세표기"로 발급하여 제출 바랍니다.

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 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